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39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한민수·조인철·송옥주

황 희 · 이연희 · 이병진

황정아 • 박해철 • 임오경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5일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휴가의 시점도 출산 시로 하고 있어 출산 이전의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 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출산 전후 15일로 늘리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출산 전후 3회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4항).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일"을 "출산 전후로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출산 전후로 3회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	
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	
구하는 경우에 <u>10일</u> 의 휴가를	<u>출산 전후로 15일</u>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u>,</u>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u>1회에</u>	④ <u>출산 전</u>
<u>한정하여</u> 나누어 사용할 수 있	후로 3회까지
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